

생활 속의 법률 기술사에서 생긴 일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 또는 유족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하거나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작업 중이기는 하나 업무와 관계없는 근로자간의 다툼에 의해서 또는 일과가 다 끝난 후 기숙사에서 근로자간의 다툼에 의해서 일방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논외로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을까?

필자도 몇 년 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을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여주 부근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피용자들의 출퇴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회사 내에 아파트 형식으로 건물을 지어 원거리 통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갑, 을, 병은 이 회사의 직원으로 모두 위 건물 201호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이 ‘여자 친구가 회사 근처로 놀러 오는데, 같이 나가서 술이나 한 잔 마시자’고 하여 세 명은 회사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겸 술을 마시고, 병은 여자 친구 배웅

을 한다고 하면서 여자 친구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남은 갑과 을은 웬지 술이 부족하다 싶어 편의점에서 맥주 몇 병을 사들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위 건물 201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갑은 맥주병으로 을의 머리를 가격하여 을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을의 유족들은 갑에 대한 청구는 물론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

1) 위 사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건을 일부 변형한 것입니다.

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먼저 확인해 보자. 대법원은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즉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②그 사건이 통상 발생할

“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② 그 사건이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일과가 전부 끝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과 을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인이고 평소 둘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을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을이 회사의 근로자였던 점을 참작해 재판부에서는 회사에서 도의적이나마 일부 금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의 거부로 결국 조정은 성립하지 못하고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리적으로 유족들의 청구에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승소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듣고 낙망해 하는 을의 유족들을 보면서 회사를 좀 더 설득해서 일부 금원이라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후회를 했던 기억이 난다. ☺



법률사무소 '온' 변호사 이호진

전화번호 : 02-6203-0703, 이메일 : ephitor@naver.com

- 사법연수원36기
- 법무법인 태일 구성원 변호사(전)
- 서울중앙 국선전담변호사
- 現)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위원